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정종길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8-20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8. .
발 의 자 : 정종길 의원 등 10명

1. 개정이유

- 별망어촌문화관이 개관함에 따라 안산시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 보전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증대와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문화 향유 등 어촌역사를 알리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.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조성 등 목적을 정함 (안 제1조)
- 박물관등의 위치와 조성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시설을 두도록 신설함. (안 제2조 제1항, 제2항, 제3항)
- 별망어촌문화관을 신설함. (안 제3조)

3. 일부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체서 등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6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※ 예고기간 : 2019. 8. 9~8.14 (5일간)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

【붙임1】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”를 “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조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·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조성 등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촌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, 관광객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, 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 및 안산시 누에섬등대전망대(이 조례에서 “박물관 등”이라 한다)를 설치 또는 조성한다.

② 박물관 등의 위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촌민속박물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1외 5필지(선감동) 일원
2. 별망어촌문화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27번지 일원
3. 누에섬등대전망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70번지(누에섬) 일원

③ 박물관 등에는 그 설치·조성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이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.

1. 전시실 등 기본시설
2. 기념품 판매, 매점, 휴게음식점 등 판매시설
3. 주차장 등 부대시설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

제3조 중 “누에섬등대전망대”를 “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”로 하고 (이하 “박물관 등”이라 한다)를 (이하 “박물관 등”으로 한다)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정종길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1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안산어촌민속박물관</u>과 <u>누에섬등대전망대</u>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<u>안산어촌민속박물관</u>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31외 5필지 (선감동) 일원에 두며 <u>누에섬등대전망대</u>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70번지(누에섬) 일원에 둔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신 설 〉</p>	<p><u>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조성 및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안산시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·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조성 및 운영에</u>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 및 조성 등) ①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은 <u>어촌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, 관광객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, 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 및 안산시 누에섬등대전망대(이 조례에서 “박물관 등”이라 한다)</u>를 설치 또는 조성한다.</p> <p>② <u>박물관 등의 위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어촌민속박물관</u>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31외 5필지(선감동) 일원 2. <u>별망어촌문화관</u>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27번지 일원 3. <u>누에섬등대전망대</u>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70번지(누에섬) 일원 <p>③ <u>박물관 등에는 그 설치·조성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이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전시실 등 기본시설</u> 2. <u>기념품 판매, 매점, 휴게음식점 등 판매시설</u> 3. <u>주차장 등 부대시설</u> 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.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업) 시장은 <u>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(이하 "박물관 등"이라 한다)</u>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~5 (생략)</p>	<p>제3조(사업) 시장은 <u>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(이하 "박물관 등"으로 한다)</u>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~5 (현행과 같음)</p> <p>부칙 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일부개정 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209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9. 2.
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조례의 도로명주소와 명칭을 정의 하였음.

주요골자

- 조례 제명을 “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 ” 로 수정
- 안 제1조 중 “어촌역사 및 ” 을 “어촌 및 별망어촌의 역사와” 로 하고 “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구성 ” 을 “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” 로 한다.
- 안 제2조 중 “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” 을 “안산어촌민속박물관” 으로 “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” 을 “안산별망어촌문화관” 으로 “안산시 누에섬등대전망대” 를 “누에섬등대전망대” 로 하고 “설치 또는 구성” 을 “설치 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1호중 “어촌민속박물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1의 5필지(선감동) 일원” 을 “안산어촌박물관: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7(선감동) 일원” 으로 같은 조 제2호중 “별망어촌문화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27번지 일원” 을 “안산별망어촌문화관 :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(성곡동)일원” 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중 “누에섬등대전망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

170번지(누에섬) 일원” 을 “누에섬등대전망대: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
부황금로 17-156(선감동) 일원” 으로 한다.

- 안 제3조 중 “별망어촌문화관” 을 “안산별망어촌문화관” 으로 한다.
- 안 제6조 중 “안산어촌민속박물관” 을 “박물관 등” 으로 한다.
- 별표는 별지와 같이한다.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일부개정 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관한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명 “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구성 및 운영 조례” 를 “안산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” 로 한다.
- 안 제1조 중 “어촌역사 및” 을 “어촌 및 별망어촌의 역사와” 로, “설치·구성 및 운영에” 를 “설치 및 운영에” 로 한다.
- 안 제2조 제목 “(설치 및 구성 등)” 을 “(설치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, 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 및 안산시 누에섬등대전망대” 를 “안산어촌민속박물관,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” 로, “설치 또는 구성” 을 “설치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1. 안산어촌민속박물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7(선감동) 일원
 2. 안산별망어촌문화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(성곡동)일원
 3. 누에섬등대전망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7-156(선감동)일원
- 안 제3조 중 “별망어촌문화관” 을 “안산별망어촌문화관” 으로 한다.
- 안 제6조 중 “안산어촌민속박물관” 을 “박물관 등의” 로 한다.
-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개정안	수정안
<p>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1외 5필지 (선감동) 일원에 두며 누에섬등대전망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70번지(누에섬) 일원에 둔다.</p>	<p>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구성 및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안산시 어촌역사 및 문화를 계승·보전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설치 및 조성 등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촌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, 관광객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, 안산시 별망어촌문화관 및 안산시 누에섬등대전망대(이 조례에서 “박물관 등”이라 한다)를 설치 또는 조성한다.</p> <p>② 박물관 등의 위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촌민속박물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31외 5필지(선감동) 일원 2. 별망어촌문화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27번지 일원 3. 누에섬등대전망대: 경기도 	<p>제명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조례</p> <p>제1조(목적)----- 어촌 및 별망어촌의 역사와 ----- ----- 설치 및 운 영에-----</p> <p>제2조(설치 등) ① ----- ----- 안산어촌민속 박물관,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----- 설 치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안산어촌민속박물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대부황금로 7(선감동) 일원 2. 안산별망어촌문화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(성곡동)일원 3. 누에섬등대전망대: 경기도

원 안	개정안	수 정 안
<p>〈 신 설 〉</p>	<p>안산시 단원구 <u>선감동 산 170번지(누에섬) 일원</u></p> <p>③ <u>박물관 등에는 그 설치·조성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이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전시실 등 기본시설</u></p> <p>2. <u>기념품 판매, 매점, 휴게음식점 등 판매시설</u></p> <p>3. <u>주차장 등 부대시설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.</u></p> <p>제3조(사업) 시장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과 <u>별망어촌문화관</u> 및 <u>누에섬등대전망대</u>(이하 "박물관 등"으로 한다)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5.(생략)</p> <p>제6조(관람료) ① <u>시장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.</u></p> <p>② ~ ④(생략)</p>	<p>안산시 단원구 <u>대부황금로 17-156(선감동)일원</u>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----- <u>안산별망어촌문화관</u> -----</p> <p>1. ~ 5.(원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관람료) ① ----- <u>박물관 등의</u> -----</p> <p>② ~ ④(원안과 같음)</p>

[별표]

**안산어촌민속박물관 관람료
(제6조제1항 관련)**

(단위:원)

구 분	어 른	청소년· 군인	어린이
개 인	2,000	1,500	1,000
단 체	1,500	1,000	700

주) 1. 개인

가. 어 른 : 20세~64세

나. 청소년 : 14세~19세(중고등학생)

다. 어린이 : 7세~13세(초등학생)

※ 6세 이하, 65세 이상 무료

2. 단체 :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 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할 경우를 말함

3.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 관람료는 무료